

의안번호	2216615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6.2.25.
추계번호	26D06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0억 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70억 3,900만원(연평균 74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128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증원	793	1,586	1,586	1,586	793	6,344	1,269
정책지원관 증원	3,509	6,516	6,676	6,840	5,787	29,328	5,866
각종 계획 수립	627	—	—	57	—	684	137
각종 위원회 설치	6	9	9	9	9	42	8
합 계	5,004	8,251	8,413	8,636	6,735	37,039	7,408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광역 생활권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변경 시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16조(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균형발전계획 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 회를 둠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 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3조(도농 복합지역 및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 내의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는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 여 지정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등 행정·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24조~안 제25조(특별지 방행정기관 사무 의 이관기준 등)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0조(의원 정수 및 선거제 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로 실시되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한하여 광주지역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정수의 2배 범위에서 증원함	의무규정
6	안 제33조(정책 지원 전문인력)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 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36조(자치 조직에 관한 특 례)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통합특별시 부교육감의 수는 2명으로 함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의 사 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37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 례)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장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두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9	안 제41조(근무 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 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 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9조(지역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는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61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각종 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63조 ~안 제65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3	안 제76조(전남 광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의 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과 주요 교육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교육위원회를 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지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4	안 제79조 ~안 제81조(농어촌 교육 및 작은 학교 지원 특례 등)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의 1면 1교 유지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통폐합 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미래형 전원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국립대학 간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대학에 대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우선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82조(미래전환도시의 조성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국내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83조(기본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선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전환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안 제85조(기본계획심의회)	-기본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를 둠	의무규정
18	안 제91조 ~안 제97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	-통합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세·소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105조 ~안 제113조(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의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특례 등)	-국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계통 접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121조 ~안 제138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메가클러스터 내의 시설에 대하여 기능 고도화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을 설립함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규제특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비투자, GPU 구입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을 인공지능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는 메가샌드박스 내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랩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126조(인공지능·에너지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2	안 제13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모빌리티 미래도시 추진단을 두고,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의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교통망 연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3	안 제149조, 안 제152조, 안 제157조, 안 제161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첨단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를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158조, 안 제159조, 안 제162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5	안 제165조 ~안 제17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노후사업단지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전에 따른 공장 신축 등의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 철강산업 산업전환 특구, 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176조 ~안 제205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사적지 보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인권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마한·후백제·가야 역사문화 조사·연구, 관광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공간 조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7	안 제204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섬 문화 보전 특구(이하 “섬 특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섬 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211조, ~안 제248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내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선진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발대상섬의 주민소득 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영해기점 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해기점 섬에 일정한 기간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21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등)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0	안 제242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	의무규정
31	안 제252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259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3	안 제268조 ~안 제27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국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4	안 제279조(통합특별시 통합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농촌·해양·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293조 ~안 제294조(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서남권 중심 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30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플랫폼사업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306조, 안 제307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310조, 안 제312조, 안 제3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국가관리무역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9	안 제316조, 안 제318조(사회권 보장 등)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주거·의료·돌봄·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권의 선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	의무규정
40	안 제320조 ~안 제332조(기본서비스 보장 및 시범사업 특례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1	안 제331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2	안 제333조(청년지원정책 재정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3	안 제339조, 안 제347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상권 구조의 재편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44	안 제341조(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하며,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군·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45	안 제348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6	안 제350조~안 제35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대학과 지역산업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47	안 제363조~안 제366조(우수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임대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8	안 제367조(문화예술의 진흥)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광역생활권 지정)	×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1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3	안 제23조(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농복합지역에 새로이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을 추정하기 곤란함

4	안 제24조~안 제2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양사무의 범위,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30조(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에 관한 특례)	0	
6	안 제33조(정책지원 전문인력)	0	
7	안 제36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미대상: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부시장, 부지사 수는 각 2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수 또한 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수가 각 1명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37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41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지원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49조(지역균형 발전계획의 수립)	0	
11	안 제61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2	안 제63조 ~안 제65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76조(전남광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전남광주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79조 ~안 제81조(농어촌 교육 및 작은 학교 지원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5	안 제82조(미래전환 도시의 조성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6	안 제83조(기본계획의 수립)	0	
17	안 제85조(기본계획 심의회)	0	

18	안 제91조 ~안 제97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 등)	×	-일괄처리기구 구성·운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 감면 또는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개발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105조 ~안 제113조(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제121조 ~안 제138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1	안 제126조(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 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0	
22	안 제13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0	
23	안 제149조, 안 제152조, 안 제157조, 안 제161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4	안 제158조, 안 제159조, 안 제162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5	안 제165조 ~안 제17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6	안 제176조 ~안 제205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7	안 제204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0	

28	안 제211조, ~안 제248조(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9	안 제214조(푸드테 크산업 육성계획 등)	0	
30	안 제242조(갯벌관 리구역 지정 및 해양 생태계 보전 등에 관 한 특례)	0	
31	안 제252조(탄소중 립 선도도시 지정 등 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2	안 제259조(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 한 특례)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268조 ~안 제276조(투자진 흥지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4	안 제279조(통합특 별시 통합 공간계획 의 우선 적용 및 경과 조치)	0	
35	안 제293조 ~안 제294조(군사시 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6	안 제305조(여객자 동차 운수사업 및 플 랫폼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7	안 제306조, 안 제 307조(대중교통 운 영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8	안 제310조, 안 제 312조, 안 제314조 (공항경제권 조성 지 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9	안 제316조, 안 제 318조(사회권 보장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0	안 제320조 ~안 제332조(기본서 비스 보장 및 시범사 업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1	안 제331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0	
42	안 제333조(청년지원 정책 재정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3	안 제339조, 안 제341조, 안 제347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4	안 제341조(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0	
45	안 제348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0	
46	안 제350조 ~안 제35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7	안 제363조 ~안 제366조(우수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8	안 제367조(문화예술의 진흥)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은 각각 2회 개최를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¹⁾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임
- 안 제30조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 정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은 46명으로 현 의원 정수인 23명만큼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30년 7월 1일 이후 의원 수는 현 의원 정수인 23명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1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의원 수 증가에 따른 비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6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합을 기준으로 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원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제정안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

(단위: 명)

구 분	현 의원정수	제정안에 따른 의원정수	
		2026.7.1.~2030.6.30.	2030.7.1. 이후
광주광역시의회	23	46	23
전라남도의회	61	61	61
계	84	107	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 안 제33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²⁾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4년간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가 23명 증원되는 경우 정책지원관은 총 66명 증원되며, 2030년 7월 1일 이후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의 수준으로 다시 줄어드는 경우(의원 수 23명 감소) 정책지원관 수 또한 의원 정수만큼 줄어들어 현재와 비교하여 증원되는 인원은 총 43명임

[표 3] 제정안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단위: 명)

구 분	현행		2026.7.1.~2030.6.30.		2030.7.1. 이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정수	의원정수	정책지원관정수	의원정수	정책지원관정수
광주광역시의회	23	11	46	46	—	—
전라남도의회	61	30	61	61	—	—
계	84	41	107	107	84	84

주: 2030년 7월 1일 이후의 인원은 각 권역별 의원 정수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하여 총 인원만 표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³⁾의 평균인 72,157천원을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4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안 제83조에 따른 미래전환도시 기본계획, 안 제126조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13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 안 제204조에 따른 섬 특구 운영 종합계획, 안 제214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안 제27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331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 안 제341조에 따른 특성화산업 기본계획, 안 제348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 제367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제정안의 각 계획 중, 안 제126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3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기본계획은 5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5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 안 제242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안 제74조의 기본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갯벌관리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 기본계획심의회의와 갯벌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⁴⁾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안 제16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평균운영예산(1억 275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안 제16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0	20	20	20	20	90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8	15	15	15	15	68
실무지원단 운영비	51	105	107	109	111	483
합 계	69	140	142	144	146	641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통합특별시 광역의회의원 증원(안 제30조)

- 통합특별시의회의원 23명이 증원되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9,3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63억 4,4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가재정소요는 현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며, 추계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만을 반영하며,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2030년 7월 1일 이후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수가 통합 이전 수준으로 감소함을 고려하여 2030년 또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만을 반영

[표 5] 의원 1명당 지급되는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의원1인당 지급비용(월)	비 고
의정활동비	2,000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⁵⁾	3,747	
합계	5,7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따라 2024년 월정수당 월3,515,100원에 2025년과 2026년 공무원 임금상승률 3.0%, 3.5%를 반영하여 산정

[표 6] 통합특별시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6개월)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의원	69	23	1,586	793	1,586	1,586	1,586	793	6,34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33조)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6년 연봉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한 연간 평균연봉은 7,216만원임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66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3억 8,1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216억 8,6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총 66명이며, 2030년 7월 1일 이후 정책지원관은 현재와 비교하여 43명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보수를 추계함

[표 7]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72	66	4,762	2,381	4,876	4,993	5,113	4,323 ⁶⁾	21,686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2030년 보수 총액은 66인, 43인 증원을 기준으로 각각 6개월치의 보수를 산출한 후 합산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1,100만원 등 5년간 28억 6,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311	640	659	679	578	2,8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⁷⁾)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8,800만원 등 5년간 44억 4,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9]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488	1,000	1,024	1,048	886	4,4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2,9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0]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329	-	-	-	-	3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억 900만원 등 5년간 293억 2,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1]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2,381	4,876	4,993	5,113	4,323	21,686
기관부담금	311	640	659	679	578	2,867
기본경비	488	1,000	1,024	1,048	886	4,446
자산취득비	329	-	-	-	-	329
합 계	3,509	6,516	6,676	6,840	5,787	29,3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각종 계획 수립(안 제49조, 안 제83조, 안 제126조, 안 제132조, 안 제204조, 안 제214조, 안 제279조, 안 제331조, 안 제341조, 안 제348조 및 안 제367조)

- 안 제4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안 제83조에 따른 미래전환도시 기본계획, 안 제126조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13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 안 제204조에 따른 섬 특구 운영 종합계획, 안 제214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안 제27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331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 안 제341조에 따른 특성화산업 기본계획, 안 제348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안 제367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등 11개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⁸⁾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안 제126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3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2026년과 2029년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외 8개 계획은 2026년 첫해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213471)」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

- 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계획 등 11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2,700만원 등 5년간 6억 8,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역균형발전계획	57	-	-	-	-	57
미래전환도시 기본계획	57	-	-	-	-	57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57	-	-	57	-	114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	57	-	-	-	-	57
섬 특구 운영 종합계획	57	-	-	-	-	57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57	-	-	-	-	57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57	-	-	-	-	57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	57	-	-	-	-	57
특성화산업 기본계획	57	-	-	-	-	57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57	-	-	-	-	57
문화예술진흥계획	57	-	-	-	-	57
합 계	627	-	-	57	-	6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각종 위원회 설치(안 제85조 및 안 제242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기본계획심의회·갯벌관리위원회의 모두 12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만원 등 5년간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기본계획심의회 (12명×연 1회)	12	12	12	12	12	60
	갯벌관리위원회 (12명×연 2회)	12	24	24	24	24	108
	소계(a)	24	36	36	36	36	168
회의참석수당(b)		0.25	0.25	0.25	0.25	0.25	0.25
계(a×b)		6	9	9	9	9	42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 갯벌관리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0억 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70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증원	793	1,586	1,586	1,586	793	6,344
정책지원관 증원	3,509	6,516	6,676	6,840	5,787	29,328
각종 계획 수립	627	—	—	57	—	684
각종 위원회 설치	6	9	9	9	9	42
합 계	5,004	8,251	8,413	8,636	6,735	37,0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